

나. 사망처리

1) 관련 규정

가) 임용 시기(「공무원임용령」 제6조)

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

2) 처리과정 및 절차

| 시행기관 | 처리내용 | 처리방법 | 유의사항 |
|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|
| 학교 | 사망보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사망보고서 작성, 보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망진단서- 사망경위서 | |
| 교육지원청 | 결과 처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사망보고서 접수, 결재◦ 사망보고(사망 후 7일 이내)◦ 나이스 인사기록 정리 및 보관(이관)◦ 발령대장, 현원대장 정리◦ 연금신청(유가족 → 공무원연금공단)◦ 포상추천: 퇴직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 (2월말, 8월말) | |
| 도교육청 | 시행문 접수, 결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시행문 접수, 결재◦ 발령대장, 현원대장 정리◦ 나이스 인사기록 정리 및 보관(이관) | |

3) 구비서류

- 가) 사망보고 시행문
- 나) 사망진단서
- 다) 사망경위서

4) 서식